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안내 (관세청고시 제2020-54호)

관세청에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의 입안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 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조세부담 완화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입안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금 부담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함.

II. 개정 내용

■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등

- 보세건설장 특허 가능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가 및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특허) ① (생 략) 1.~ 4.(생 략)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 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 제4조(특허) ① (현행과 같음) 1.~ 4. (띄어쓰기 오류 수정)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 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제5호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 2024년 -----

(재검토기한 재설정)

III. 시행일자

- 시행일자 미정.

IV.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0월 0일 까지

2. 제출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T.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규진 사무관(T.042-481-7906, leeguj@korea.kr)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 [붙임2]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 [붙임3]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 Contact



양다운 관세사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이재훈 관세사
T 070-4353-1553
E jhlee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